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7일 용혜인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 7.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8. 2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1. 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용혜인의원)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2018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아동수당의 정책적 실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함.

대한민국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비이며, 양육비 부담은 8세 이상인 학령기로 접어들수록 커짐.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는 아동수당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야 함.

OECD 아동수당 지급국가 32개국 중 19개국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매월 약 30~40만 원 규모의 아동수당을 지급함.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이 실효성 있는 초저출생 대책이 되려면 선진국과 유사하게 정책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함으로서, 아동수당법의 본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아동수당을 초저출생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지급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와 아동수당 금액 상향 조정은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고, 특히 개정안별로 지급 금액도 상이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한편, 개정안은 아동수당 외 부모급여의 추가지급 방식이 아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수당(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연령 구분에 따른 차등 지급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지원의 영아기 편중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액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현재 부모급여 외 첫만남이용권이 첫째 자녀에게 2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도 출생 초기에 지급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러한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영아기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가 약 8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14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1항 단서)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임.

현행 「아동수당법」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일정 연령 이상의 아동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아동수당의 수혜자는 아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아동수당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국가의 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모두 18세 이상으로 그 연령을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 연령 설정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 외, 개정안의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 변경 요건 추가(안 제12

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현행 「아동수당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자체장이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접 또는 보호자(보호자의 대리인 포함)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인 수급아동이 보호자와 실질적인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 내 갈등 및 학대 등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보호자 변경이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보호자의 변경 요건에 추가하고 있는데, 명백한 조치 또는 수용 사실이 아닌 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검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율 확대 필요 등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